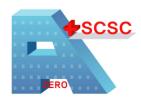
석면조사 결과보고서



배재대학교단상 석면조사

2014. 02.



▶scsc 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 |주|

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56 201호

TEL: 1661-5404 FAX: 042)524-1789

목 차

- 1. 석면조사 종합결과표
- 2. 석면조사 개요
- 3. 석면함유자재 균질부분 함유면적 집계표
- 4.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
- 5. 조사기관 지정서 사본

1.석면조사 종합 결과표

1.조사현황

MIL	건축물소재지	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-40				
현장	의뢰처(소유주)	배재대학교			TEL	042-520-5114
조사대상구분	☑ 건축물	□ 설비[파이프,보온재,개스킷,패킹재,실링재 등]			!,패킹재,실링재 등]	
용도 및 구조	■ 주용도 : 교육연구및복지시설 ■ 구조 :철근콘크리트조					
조사목적	선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지도용			ecsc		
조사책임자	박준근 - 대기환경기사 93202130466Z 건물연면적		34.56 m²		34.56 m²	
조사자	최범규 - k.s13-87			0.4 E.C.m²		
분석자	안은지 - 분석학사		조사연면적			34.56 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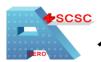
2.석면조사결과

종류	석면함유의심자재	분석결과	석면종류 및 함유량	시료수	석면함유면적
_	없음	_	-	_	_
O m²					

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,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에 의하여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14년 02월 11일



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 | 주

노동부2012-120004호 석면조사기관



2.석면조사 개요

가. 조사개요

배재대학교단상 석면조사는 **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, 석면안전관리법 제5장 21조** 에 근거하여 현장 조사와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.

나. 조사목적

- ①『석면안전관리법』시행으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
- ② 조사된 석면사용 실태 및 관리현황을 근거로 석면지도 작성하고 석면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석면을 관리하고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
다. 조사방법

석면조사는 "산업안전보건법" 시행규칙 제 80조의 4에 따라

- ① 건축도면, 설비제작 도면 또는 사용자재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함유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의 현황을 참고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- ②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 중에서 석면함유 의심물질에 대하여는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"고용 노동부 고시"제2012-9호 [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]에 따라 시료를 채취 및 분석조사를 하였습니다.

[참고]

- ①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유지, 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② 기관석면조사실행 이후 해당 건축물의 공사(해체, 철거, 보수, 등)진행전 또는 진행 중에 석면조사당시 구조적으로 조사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구역이나 노출되지 않은 부분(예> 2,3중 덧시공)에서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가 발견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(주) ☎1661-5404로 통보하여,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
라. 현장사진



단상



창고

3. 석면함유자재 균질부분 함유면적 집계표

구분	석면함유건축자재	석면종류 (함유율)	균질구분	면적	소계
_	없음	_	-	-	-
	총 석면함유자재면적 0㎡				

- ** 균질지역 구분에 관한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2012-9호 제4장 2
- ** 건축물의 석면면적은 조사자의 실측에 의한 것이며 측정위치 및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.

4.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

■ 『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』제28조 제1항, 『환경부고시 제2012-81호』 "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"에 따라 다음 항목의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합니다.

1.평가

석면함유자재	항목	상세항목	점수
	물리적 평가	비산성	_
		손상상태	_
		석면함유량	-
	진동,기류,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	진동에 의한 손상가능성	_
		기류에 의한 손상가능성	_
없음		누수에 의한 손상가능성	_
	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	유지보수형태	_
	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	유지보수빈도	_
	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	상주인원 또는 거주자 수	_
		구역의 사용빈도	-
		구역의 1일 평균사용시간	-

2.결론

석면함유자재	점수	위해성등급
없음	-	해당없음

■ 관련근거-별첨

5.조사기관 지정서 사본

제2012-120004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 관 명	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주식회사			
소 재 지	(301-807)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56 (목동) 201호 (목동) 201호			
대표자성명	송영식			
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	
지정사항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	
	대행(지정) 지역	석면조사		

※ 준수사항

- 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2. 6. 28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중